

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(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)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4일

약수동



- 공고명 :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4. 6. 14. ~ 2024. 6. 28. (14일간)
-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

연번	대상자	주 소	위반사항	비고
1	문*민	서울시 중구 동호로8길 7, ***호	2023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	
2	조*삭	서울시 중구 동호로8다길 35-4, ***호	2023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	

4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민방위기본법 위반(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)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,
- 나.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에 약수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또는 전용계좌(전자납부번호)를 이용하 납부하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 내 미납시 3%의 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.2%증가산금이 합산 부과(증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)되며,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
- 다.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의처 :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주민지원팀 민방위 담당(☎02-3396-6772)